

「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신용하·추은희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춘남, 박세채,
이명희, 이상호, 장미경, 정지원 의원(10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신 용 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의 외국인 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호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신설(안 제7조)
- 위탁 근거 신설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
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0조
 - 「근로기준법」 제6조
 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외국인근로자는 언어·문화적 장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됨.

- 구체적으로,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,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, 사업장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구미시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